

순천대학교 공과대학발전기획단규정

제정 1995. 7.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공과대학발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과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2. 공과대학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3. 공과대학 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과 섭외에 관한 사항
4. 공과대학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과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기획단은 공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기획단장 및 위원 5인과 공과대학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에는 기획분과·연구분과·교육분과·시설분과·운영분과를 두고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공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② 기획단 각 구성원의 직무는 공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기획단 회의는 공과대학장, 기획단장 또는 기획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위원) 기획단은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기획단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위촉한다.

제7조(사무직원) 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장이 별도의 직원을 두거나 행정실 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기획단 구성원과 연구위원 및 직원에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정 등 운영세칙) 기획단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는 공과대학 발전기금의 과실금에서 조달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5. 7.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